

의안번호	제697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수산파크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·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,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및 위원회 등 명칭변경(안 제1조~제8조, 제10조, 제13조·제14조, 제5장, 제18조~제20조, 제25조·제26조)
 -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변경
-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19조)
 -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9년 12월 31일까지”로 조정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체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(제외사유서 불임)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”를 “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(이하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”를 “충북수산파크(이하 “수산파크”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 입주업체”를 “수산파크 입주업체”로, “수산식품 거점단지 내”를 “수산파크 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6조 전단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”를 “충북수산파크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,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3호다목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각각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산식품 거점단지”를 “수산파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북수산파크 운영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위원회의 위원은 제 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북수산물파크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”를 “충북수산물파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</u> <u>운영 및 관리 조례</u>	<u>충북수산물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</u>
제1조(목적) <u>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</u> 는 수산식품 등의 생산·가공·판매·연구개발·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충북수산물파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사용자”란 <u>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</u> (이하 “ <u>수산식품거점단지</u> ”라 한다) 시설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	4. ----- <u>충북수산물파크</u> (이하 “ <u>수산파크</u> ”----- ----- -----.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치 등) ①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“ <u>도지사</u> ”라 한다)는 <u>수산식품거점단지</u> 를 설치·운영한다.	제3조(위치 등) ① ----- ----- <u>수산파크</u> ----- -----.
② <u>수산식품 거점단지</u> 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번지 일원으로 한다.	② <u>수산파크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기능) <u>수산식품 거점단지</u> 의	제4조(기능) <u>수산파크</u> -----

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~ 6. (생략)

7. 수산물식품 거점단지의 효율적인
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
의 설치·운영 등

제5조(운영·관리 및 분양) ① 수산물
식품 거점단지 시설은 충청북도
직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
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
· 가공 · 판매 · 연구개발 · 전시홍
보 등의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법
인이나 단체, 개인 등에게 위탁하
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
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
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
다)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
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산물식품 거점단
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
에는 위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 등
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
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
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
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
다.

④ 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입주업체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수산물파크-----

제5조(운영·관리 및 분양) ① 수산물
파크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수
산물파크 -----

③ ----- 수산물파크 -----

④ 수산물파크 입주업체 -----

운영에 있어 임대를 원칙으로 하
되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수산물 거점단지 내
부지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
분양할 수 있다.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
률」 및 수산물 거점단지 관리
기본계획에 따라 분양을 할 수
있으며 가공시설 용지에 한정하
다.

2. 분양을 통한 시설에서는 수산물
거점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
른 수산식품을 주로 생산하여야
한다.

3.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 받
은 자는 분양 부지 및 분양 부지에
건립된 시설을 매매할 경우 운영
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
야 하고, 이 분양 부지 또는 시설
을 매수한 자는 당초 매도자의 운
영조건인 수산물 거점단지 관리
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시설을 운영
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·수익 허가) 수산물
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·수익하
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

----- 수산파크 내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수산파크 -----

-----.

2. ----- 수산
파크 -----

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수산파크 -----

-----.

제6조(사용·수익 허가) 수산파크---

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사용·수익 허가의 방법) ①

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·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,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8조(사용·수익 허가기간) ① 수

산물식품 거점단지 사용·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청문) 도지사는 제9조에 따

라 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료 부과) 수산물식품 거점

단지 시설물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단, 사용자의

----, -----
-----.

제7조(사용·수익 허가의 방법) ①

수산물파크 -----

-----.

② ----- 수

산물파크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·수익 허가기간) ① 수

산물파크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청문) -----

- 수산물파크 -----
-----.

제13조(사용료 부과) 수산물파크 ----

-----.

운영 상황 및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료 감면) 도지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제5장 충청북도

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

제18조(운영위원회) 도지사는 수산물식품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9조(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축수산과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2. (생략)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

--.

제14조(사용료 감면) -----
----- 수산물파크 -----

-----.

제5장 충북수산물파크 운영위원회

제18조(운영위원회) ----- 수산물파크 -----

----- 충북수산물파크 -----

-----.

제19조(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또는 위촉하는 사람

가.·나. (생 략)

다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
거점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
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
인정하는 사람

③ ~ ⑤ (생 략)

⑥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5년 12
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·관리
에 관한 사항
2. (생 략)
3. 수산식품 거점단지 분양에 관한
사항
4. 수산식품 거점단지 편의시설 설
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(생 략)

제25조(양식수산물의 분양) ① 도지
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
장이 매년 실시하는 수산식품 거
점단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
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
소재한 양어장, 수산물유통시설,
그 밖의 수산식품 관련 기관·법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 수산파크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2029년 12월
31일-----.

제20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-----.

1. 수산파크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수산파크 -----

4. 수산파크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양식수산물의 분양) ① ----

----- 수산파크 ----

인·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6조의2(수산물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① 도지사는 수산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산물 거점단지 내에서 개최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수산물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① -----

----- 수산물파크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4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□ 산업단지 관리지침

제20조(산업단지 브랜드 명칭)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색과 미래상이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(이하 이 조에서 "브랜드 명칭"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과 상호 조화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

○ 사 유

-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식품 거점단지 명칭 변경과 운영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○ 작성자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